

◎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4-120호

「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,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를 고시함에 있어, 그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12월 10일

화학물질안전원장

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- 가. 신규로 지정된 유독물질(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 포함)을 취급하는 자에게 화학물질관리법(이하 “법”)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기한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조치 규정(부칙)
- 나. 유독물질 관리체계가 개편(인체급성유해성물질, 인체만성유해성물질, 생태유해성물질)되어 관리 기준이 차등화됨에 따라 고시 시행일 이후 고시에 포함된 유독물질 취급 시 개정된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‘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’ 과 ‘영업허가’ 에 대해 적용례를 마련
- 다. 고시 당시 2025년 1월 1일로 법 시행일을 예상하여 적용례(또는 시행일)를 설정하였으나, 2025년 8월 7일로 변경됨에 따라 3건의 고시의 적용례 조정 필요
- 라. 또한, 고시 시행일 이후 적용일 이전부터 취급한 자에게도 경과규정 적용이 필요하며, 영업허가에 대한 이행기간을 제공하기 위해 경과규정을 적용일 이후로 조정 필요

2. 주요내용

- 가. 3건의 고시에 대하여 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(취급시설의 배치·설치 및 관리 기준 등) 및 제 28조(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)의 적용일을 2025년 1월 1일에서 2025년 8월 7로 개정
 -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80호) 제1조
 -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41호) 제2조
 -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3호) 제2조
 - 나. 또한, 고시 시행일 이후 부터 적용일 이전까지 취급하던 자에게 경과규정을 적용하고 영업허가에 대한 경과규정을 2026년 7월 1일로 조정
 -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-80호) 2조
 -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-41호) 3조
 -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부칙(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-3호) 3조
- ※ 유독물질 지정고시 위임업무가 "국립환경과학원"에서 "화학물질안전원"으로 변경됨(화학물질안전원고시 2024-17호, 2024.04.30.)

3. 의견제출

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, 단체(협회)는 2024년 12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

제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(화학물질등록평가팀, 전화 032-560-8681, 모사전송 032-568-2038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수정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본 「유독물질의 지정고시」 일부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(www.nics.me.go.kr)

내 「법령정보-행정예고」에 게재되어 있음